



**KR**  
KOREAN REGISTER OF SHIPPING

**TECHNICAL  
INFORMATION**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618-814  
Republic of Korea

Phone : +82-70-8799-8328  
Fax : +82-70-8799-8339  
E-mail : convention@krs.co.kr  
Date : 23 August 2017

NO. 2017-IMO-10 (K)

Person in charge: Kweon, Young-Suk

**제목 : 마셜아일랜드 국적선의 ECDIS Software update 관련지침**

**1. 개요**

- 앞서 발행된 KR 기술정보(NO. 2017-IMO-04, 2017년 2월 22일 발행)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선박에 설치된 ECDIS는 2017년 09월 01일까지 최신 IHO/IEC 기준에 적합하도록 업데이트 되어야 합니다. (첨부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ECDIS와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문제, ECDIS 제조사/서비스 업체의 수행인력 부족 또는 업데이트 후 화면표시 불량 등의 문제로 적용일까지 적절히 업데이트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이에, 마셜아일랜드 기국은 관련지침(MSA No.34-17, 2017년 8월 21일 발행, 첨부참조)을 발행하여 자국선박에 대한 조치방안을 안내하고 있으니 선주/운항자, ECDIS 제조사/서비스 업체 그리고 현장검사원께서는 아래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MSA No. 34-17 주요내용**

- 적용 : 마셜아일랜드 국적선 중 2017년 09월 01일 전까지 상기 등의 문제로 ECDIS가 적절히 업데이트 될 수 없는 선박에 적용됨
- 선주/운항자는 아래 5가지 사항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선급을 통하여 Case by case로 기국에 문의하여야 함. 기국의 허가를 얻는 경우, 선급은 Statutory memo를 발행할 수 있음. (☞ 우리 선급의 경우, Survey Status 상에 Convention Note 추가)

(1) 선주/운항자는 선박에 설치된 ECDIS의 제조사/서비스 업체 등에 사전 연락하여 ECDIS의 업데이트를 위한 수리 예정일이 기록된 수리계약서(Repair contract) 또는 확약서(Confirmation letter) 등을 서면으로 발급 받아야 함. 단, 이러한 수리 예정일은 2017년 09월 01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2) ECDI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선박은 SOLAS V/27 규칙에 따라 적절히 최신화된 종이 해도와 해사간행물을 비치하여야 함. 그렇지 아닐 경우, 이러한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사용하여도 운항상에 즉각적인 위험이 되지 아니하며, SOLAS V/27 규칙 또한 만족할 수 있다는 ECDIS 제조사에서 발행한 확약서(Confirmation letter)를 선급에 제출하여야 함

(3) 항해당직사관은 종이해도와 ECDIS의 사용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야 함

(4) 선장은 입항전 이러한 사실을 항만국에 통보하여야 함

(5) ECDIS 제조사로부터의 확약서(Confirmation letter) 등은 PSC 수검시에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본선에 비치하여야 함

## 2. 선주/운항자 및 ECDIS 제조사/서비스업체 조치 사항

(1) 선주/운항자는 제조사로부터의 각종 문서를 포함한 상기 5가지 요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시한 확약서(Confirmation letter) 또는 공문을 검사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가까운 지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ECDIS 제조사/서비스 업체는 자사 제품의 상기 조치에 필요한 문서 등을 선주/운항자가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현장 검사원 조치 사항

▪ 선주 및 운항자로부터 상기 확약서(Confirmation letter) 또는 공문을 접수한 경우, 검토 후 마셜아일랜드 주관청([technical@Register-IRI.com](mailto:technical@Register-IRI.com))에 문의하여 허가를 얻는다.

▪ 주관청의 허가가 있을 시, 신청된 정기적 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통하여 상기 요건들이 준수되고 있는지 검사한다.

▪ 검사결과가 만족스러울 경우, 아래와 같이 Survey Status 상에 Convention Note를 추가한다.

(예시)

In accordance with MSA No.34-17, this vessel was authorized from Marshall Islands to continue to sail until the completion of ECDIS software update. However, the update of ECDIS must be conducted not exceeding 90 days from 1 September, 2017. Until the update is completed, the vessel must have paper charts and nautical publications necessary for the intended voyage to meet SOLAS V/27.

#### 4. 참고사항

- 2017년 9월 25일 개최 예정인 제4차 IMO 협약이행 전문위원회(III) 회의에 동 사항과 관련하여 INTERTANKO가 제출한 문서(III4/5/8)를 첨부하오니 추후 회의 결과에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1. KR Technical Information NO. 2017-IMO-04
2. MSA No.34-17
3. IMO III 4/5/8 - Comments on the outcome of NCSR 4 on monitoring of ECDIS issues (INTERTANKO)

정 부 대 행 검 사 본 부 장



배부처 : 선주 및 운항자, ECDIS 제조사/서비스 업체, KR 검사원, 기타관련 단체

**Disclaimer** :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